

송파 세모녀법 통과,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여전

김세원*

Summary

□ 송파 세모녀법,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수급자는 13만 7천명으로 늘어남.
 - 기존 정부안의 추가 수급자 12만명에 1만 7천명(중증장애인 가구 포함)이 새로운 수급자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임.
 -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40만명이 추가됨.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(2014년 120~150% → 2015년 185% 이하) 및 금융재산 기준(2014년 300만원 → 500만원 이하) 완화, 지자체 장 재량권 확대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□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여전
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실효성 문제 : 개편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117만명의 약 1/10만 추가 지원받음.
- 소득인정액 문제 여전 : 추정소득, 간주부양비,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 소득 환산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.
- 수급자 선정기간 증가에 따른 문제 (현행 30일→60일) : 빈곤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긴급성 저해
- 실질적인 지원혜택 증가 미미 : 혜택이 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거의 변화없음.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대상자가 주로 늘어나는데 현재 수급자는 주거급여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11만원, 교육급여는 초, 중학생 부교재비 연 5만원, 중,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연 5만 정도 혜택
- 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필요 : 사위, 며느리 등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, '수급권' 판단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현실적인 기준 필요

*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/swkim@ggwf.or.kr/031.267.9378

□ 송파 세모녀법,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
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1)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- '부양능력 있음' 선정기준이 4인가구 346만원 → 507만원으로 완화 (수급자 2인, 부양의무자 4인가구 경우, 2014년 기준)
- '부양비 부과기준선'도 4인가구 212만원 → 404만원으로 완화
-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(가구원 수 1명 더 인정)

<표 1>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

	부양의무자 소득기준	추가수급자(생계급여)	추가 소요재정
현행	최저생계비의 130% (4인가구 212만원)	-	-
기존 정부안	최저생계비의 185% (4인가구 302만원)	12만명	9100억원
여야 합의안	중위소득 (4인가구 404만원)	13만 7200명	1조 1600억원

※4인가구 소득은 2014년 기준

출처 : 한국경제(2014.11.18.)

- 기존 정부안 추가 수급자 12만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1만 7천명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음(중증장애인 가구 포함).
 -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40만명이 추가됨.
 - 개별 급여 중 하나라도 지급받는 사람이 80만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

2)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

- All or Nothing 구조에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개편됨.

<표 2>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

현행		→	개편 후	
선정 기준	급여수준(내용)		선정기준	최저보장수준(내용)
최저 생계비	최저생계비의 80%수준 현금급여 (현물급여 등 제외)	생계	중위소득 30% 수준	중위소득 30% 수준
		주거	중위소득 43% 수준	지역별 기준 임대료
	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(현물급여)	의료	중위소득 40% 수준	현행과 동일
	수업료, 교과서대 등(현물급여)	교육	중위소득 50% 수준	현행과 동일

2. 긴급복지지원법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
 - 소득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 120~150% 이하 → 2015년 185% 이하
 - 금융재산기준 2014년 300만원 이하 → 2015년 500만원 이하로 완화
 - 대상자 선정 요건인 '위기상황'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**재량 확대**,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음.
-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2013년 84천 → 2015년 15만 6천건으로 증가 예상, 예산은 634억원 → 1,305억원으로 증액 예정

3.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
 -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 보완,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 보호 강화, 맞춤형 복지기반 마련 내용

□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여전

1.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실효성

-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117만명의 약 1/10정도만 추가로 지원을 받음. 이는 복지사각지대 완화로 보기에 불충분함(웰페어뉴스, 2014. 11. 18.)
 - 교육급여의 경우,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나 생계, 주거, 의료급여의 경우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.
 - ‘부양비 부과기준선’도 4인가구 212만원 → 404만원으로 완화되었으나, 현재 우리나라 가구원 구성 수는 1, 2, 3인 가구가 70% 정도 차지, 빈곤계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음. 2인 가구 중위소득은 250만원, 3인가구는 330만원 정도임. 소득기준을 완화해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음.
 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13만 7천명의 사각지대 확대는 지난 3년 사이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의 절반 수준에 그침.



[그림 1] 2001년~201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

2. 소득인정액 문제 여전

-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,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의 소득 환산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득인정액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음.

3. 수급자 선정기간 증가에 따른 문제 (현행 30일 → 60일)

-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후 기존 최대 30일 내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던 조항이 최대 60일 내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. 이는 빈곤층의 최저 생계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긴급성을 저해하는 조항임.

4. 실질적인 지원 혜택의 증가 미미

- 수급 혜택이 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고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대상자가 늘어남.
 - 주거급여의 경우 현재 수급자들은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 정도만 증가함.

- 교육급여의 경우 초,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, 중학생은 부교재비 연 5만원, 중,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연 5만원 정도 혜택.
- 수급자 수 증가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액의 증가분은 크지 않음.
-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은 2천억원으로 한정, 이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제한이 컸음.

5. 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필요

- 부양의무자 범위 완화 또는 폐지 등 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필요
 - 현재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 일찍 사망하고 며느리 또는 사위만 있는 경우 장인, 장모, 시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.
 -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사위, 며느리 등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에는 반영되지 않음.
 - 독일과 일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사적 부양의 원리를 따르나, 급여수준에만 영향을 미치고 '수급권'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. 스웨덴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공적 부양의 원리를 따르고 있음.
 - 심각한 노인빈곤율과 실질소득 감소, 사적 부양의 고충에 따른 갈등,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능력 없는 문제, 복지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마련이 시급함.

G-Welfare Focus(GWF)는 주요 정책고객 및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복지와 관련된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을 제언하는 비정기적 발간물입니다.